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7명, 7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인력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10명(4급 3명, 5급 7명)”을 “8명(4급 1명, 5급 7명)”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4명(4급 4명)”을 “3명(4급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2명(6급 2명)”을 “4명(6급 4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22”를 “6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6”을 “617”로 하며, 행정사무관 “116”을 “117”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39”를 “6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34”로 하며, 행정사무관 “136”을 “137”로 한다.

별표 6의3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6,654”를 “6,669”로 하고, 일반직 계 “6,654”를 “6,66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39”를 “245”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2”를 “53”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1”을 “327”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9”를 “91”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6,644”를 “6,659”로 하고, 일반직 계 “6,644”를 “6,65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37”

을 “243”으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2”를 “53”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4”를 “33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9”를 “91”로 한다.

별표 1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10”을 “12”로 하고, 일반직 계 “10”을 “1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3”을 “5”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4년 4월 12일”을 “2026년 4월 12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생 략) ② 삭 제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 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 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u>10명(4급 3명, 5급 7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생 략)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 ----- <u>8명(4급 1명, 5급 7명)</u> -----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 (생 략)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 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 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 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4명(4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⑥ (생략)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2024년 4월 12일까지 존속한다.

----- 3명(4급 3명)-----

④ -----

----- 4명(6급 4명)-----

⑤·⑥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2026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2</u>	<u>623</u>	+1
·	·	·	
·	·	·	
일반직 계	<u>616</u>	<u>617</u>	+1
·	·	·	
·	·	·	
행정사무관	<u>116</u>	<u>117</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9</u>	<u>640</u>	+1
•	•	•	
•	•	•	
일반직 계	<u>633</u>	<u>634</u>	+1
•	•	•	
•	•	•	
행정사무관	<u>136</u>	<u>137</u>	+1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54</u>	<u>6,669</u>	+15
일반직 계	<u>6,654</u>	<u>6,669</u>	+15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39</u>	<u>245</u>	+6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u>52</u>	<u>53</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21</u>	<u>327</u>	+6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89</u>	<u>91</u>	+2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44</u>	<u>6,659</u>	+15
일반직 계	<u>6,644</u>	<u>6,659</u>	+15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37</u>	<u>243</u>	+6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u>52</u>	<u>53</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24</u>	<u>330</u>	+6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89</u>	<u>91</u>	+2

	.	.	.	
	.	.	.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u>	<u>12</u>	+2
일반직 계	<u>10</u>	<u>12</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u>3</u>	<u>5</u>	+2
·	·	·	
·	·	·	